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홍국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홍국화재해상보험(주)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2.17.~2015.3.10. 기간 중 뇌혈관 질환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7일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했음에도, 7일을 초과해 총 22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3.26.~2015.11.20. 기간 중 A보험회사 등 1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23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홍국화재해상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2.10.22.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丙, 丁과 공모하여 丁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2022.10.26.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54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